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은미 의원)

의안 번호	487
----------	-----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3일

발 의 자: 이은미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의원

1. 제안이유

-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태조사 및 처리사업 등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처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2. 군수의 책무(안 제3조)
3. 사업(안 제4조)
4. 실태조사(안 제5조)
5. 사무 위탁(안 제6조)
6.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5. 9. 29. ~ 2025. 10. 10. 의견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2. 방치 농기계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무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4조제2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타 시·군, 경찰서, 소방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

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지난 후에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2.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해당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이전이나 견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농업기계의 분해, 파손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정비·수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매각에 드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른 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
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연락처	(033) 330 - 1306